

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·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1호
- 나. 발 의 자 : 김영한 의원외 12명
- 다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14일
- 라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19일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“행정안전부”를 “안전행정부”로 하고 “완료”를 “마치다”로 하며 “하고자 하는”을 “하려는”으로 하고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며 “과다하게”를 “지나치게 많이”로 하고 “귀책사유”를 “책임질 사유”로 함. (안 제5조, 제6조, 제7조)

3. 검토의견

가. 제안 배경 및 개요

- 본 조례안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

나. 세부사항별 검토결과

1) 자구수정(안 제5조제1항, 안 제6조제3항)

- 안 제5조제1항중 “완료한”을 “마친”으로 변경하였으며, 안 제6조제3항중 “수행하고자 하는”을 “수행하려는”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한 것임.

2) 자구수정 및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조직명 변경(안 제7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)

- 안 제7조제1항제3호중 “행정안전부의”를 “안전행정부의”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는 바,

- 이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미리 반영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나,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일부) 중 “안전행정부”는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함.
- 안 같은 조 제3항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변경하도록 하고, 안 같은 조 제4항중 “과다하게”를 “지나치게 많이”로 하며, “귀책사유가”를 “책임질 사유가”로 각각 변경함.
- 이는 「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」에 따라 정비한 것임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으나, 정부조직개편(2014.11.19.일부) 중 “안전행정부”는 “행정자치부”로 조직이 개편되었으므로 이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음.